

보도시점 (지 면) 9. 30(월) 조간  
(엠바고) 9. 29(일) 12:00

## 전기요금 지원, 전화 한 통으로 받으세요!

- 9.30(월)부터 온라인 신청에 익숙치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200))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9월 30일(월)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전화상담실(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만 가능하여 온라인 신청이 익숙치 않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전화상담실(콜센터) 접수개시를 통해 이러한 애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며,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전화상담실(콜센터) 전화접수와 함께 기존처럼 온라인으로도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또는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 **지원대상** : ①최초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 (매출액 6천만원 초과 사업자는 정책자금 제외 업종 지원 제외)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④개인·법인사업자
-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온라인 신청에 익숙치 않고 지역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 신청을 못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청방식을 개선했다.”며, “이에 더해 현장지원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책임자	과 장	이청일 (044-204-7821)
		담당자	주무관	권유영 (044-204-7847)
			주무관	조세곤 (044-204-7824)

